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가단1461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준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병삼

변론 종결2022. 1. 11.

판결 선고2022. 2. 8.

주 문

1. 피고들 사이에 2020. 4. 9.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20. 4. 9. 접수 제13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2.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2020. 4. 9.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20. 4. 9. 접수 제13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989호로 D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같은 법원 2019고단4429호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20. 4. 24.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986호).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9. 25. 위 2019고단1989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2019고단4429호 사건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 B의 발언의 중요한 부분인 "원고가 첩을 데리고 살았는지 여부"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그 내용은 피해자인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며 피고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인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있었고, 위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며 피고 B에게 이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 B가 위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되 위와 같이 무죄인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 B를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 2019고단1989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피고 B)는 2019. 2.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2호선 삼성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E 교회 담임 목사인 피해자 A(원고)가 위 교회 장로의 첩을 데리고 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등 기자 2명, 동료 목사, 장로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A가 장로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서 생뚱을 싸게 하고, 그 장로가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요새는 A가 그 첩을 데리고 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14108호), 대법원이 2021. 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제1심 법원은 당초 2020. 2. 28.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다가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2020. 3. 20.로 변경하였는데, 원고가 2020. 3. 18.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위 사선 변호인이 공판재개신청을 함에 따라 2020. 3. 31. 공판기일을 열었고 2020. 4. 24. 위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는 위 제1심 판결 선고일 이전인 2020. 4. 9. 같은 일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B의 공유지분인 49/100 지분을 피고 C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10.경 다음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위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은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0. 15:00경 서울 강남구 H1) 에 있는 I2) 총회 회관 1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E3) 교회 담임 목사인 피해자 A4) 가 K5) 에게 위 교회 장로의 지위를 주거나, L6) 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받거나, M7) 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8) , N9) , O10) 등 기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A11목사가 K12를 장로를 시켰다. A13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L14가 A15한테 반해서 제네시스를 사줬다. 남자(K16)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장로인 나도 안 사줬는데 마누라가 그걸 사줬어, 눈 뒤집어지지, M17를 따 먹으니 맞나더냐, A18가 M19를 따먹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2019. 9. 열린 I종교단체 J교단 총회 임원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며 원고가 담임목사직까지 그만두게 되고 정신과 치료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이 확실시되자 위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B의 발언들은 제보자 K의 진술 및 진정서에 기초한 것이고, K의 지인인 P도 K으로부터 진정서와 동일한 취지의 얘기를 들었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실제로 K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5주의 늑골 골절을 입어서 피고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 B의 발언은 식사자리 등 특정된 소수가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서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고 원고를 제외한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고, 원고의 낙선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의 낙선은 원고의 과거 잘못된 행적들이 언론 등에 의해 폭로되었기 때문이지 피고 B의 발언 때문이 아니므로 낙선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는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할 목사를 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고,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영향력이 현저하게 낮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 C의 단독소유였다가 피고 B가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고 B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피고 C의 소유라고 생각해왔고 피고 C로부터 이혼 및 지분 반환을 요구받아 이를 다시 돌려준 것이며 피고 B는 Q 언론에서 매달 70만 원의 판공비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강연료 등 부수적인 수입이 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고, 형사사건에서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사에 관하여 원고가 R 기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 선고 전인 2019. 7. 11.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여서 유죄가 선고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성실히 지급할 것이므로 피고 B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내용인 "원고가 첩을 데리고 살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그 내용이 피해자인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며 피고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인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있었다는 점, 위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고 피고 B에게 이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으며 피고 B가 위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배척할 만한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피고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거나 갑 제10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K이 "L이 원고에게 제네시스를 사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의 위 발언 전에 K의 진술을 인용하여 L이 원고에게 신형 제네시스를 사주었다는 언론기사가 있기도 하여서 피고가 그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착오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6, 7, 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의 발언 내용과 그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피고의 명예훼손 발언 중 상당 부분은 K의 발언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발언과 함께 원고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내용 중 원고의 K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 B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원고와 K, L와 관련된 제반 갈등의 내용과 경과, 원고는 K에 대한 폭행 사실과 L이 원고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사주었다는 내용 등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도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데 피고의 발언은 많지 않은 수의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말한 것으로서 언론보도에 비하여 영향력이 상당히 적고, 명예훼손이 되는 발언의 일부 내용이 위 언론보도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점, 원고가 파면된 것은 위와 같이 사실로 인정되는 폭행을 사유로 삼은 징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전파성과 영향력이 적지 않은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원고의 선거 낙선 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명예훼손 행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19.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49/100 지분 이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고 금융자산도 없는 반면 S에 대하여 11,847,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T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피고 B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며 피고들이 앞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집행이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피고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기초사실 라항과 같이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증여한 점과 피고 B가 여러 해 동안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던 공유지분을 구태여 위 판결 선고 무렵 피고 C에게 증여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들이 부부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9/100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상호

별지

- 1) H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에 위치한 건물이다.
- 2) I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관이다.
- 3) E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이다.
- 4) A는 원고의 이름이다.
- 5) K는 E 교회의 장로이다.
- 6) L은 E 교회의 집사이다.
- 7) M은 E 교회의 교인이다.
- 8) F는 언론인이다.
- 9) N은 언론인이다.
- 10) O는 언론인이다.
- 11) A는 원고의 이름이다.
- 12) K는 E 교회의 장로이다.
- 13) A는 원고의 이름이다.
- 14) L은 E 교회의 집사이다.
- 15) A는 원고의 이름이다.
- 16) K는 E 교회의 장로이다.
- 17) M은 E 교회의 교인이다.
- 18) A는 원고의 이름이다.
- 19) M은 E 교회의 교인이다.